

◆ 政府 施策 ◆

輸入先 多邊化 品目 일부 해제 - 보호효과 적은 25개 내외 대상 -

상공자원부는 내년초 25~26개 정도의 품목을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제외, 日本産의 수입을 자유화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경쟁력이 약한 품목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경쟁을 제한,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을 비롯 韓日경제협력증진에 지장을 주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이 규제품목을 축소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미 오는 98년까지 규제품목을 절반정도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따라 우선 내년도에는 기존 지정품목 258개중(HS10단위기준) 10%인 25~26개를 지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기존 규제품목중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월등해 해제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품목과 국내수요가 크지 않은 품목, 국내산업 보호효과가 적은 품목을 조사, 이를 해제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수입규제 해제시 국내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전제품등은 당분간 對日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산지가 일본인 경우 수입이 규제되는 품목은 기계류가 118개, 전자 및 전기제품이 61개(전기제품 19개:별첨), 섬유생활용품이 57개 등이다.

전기공업 관련 수입선 다변화 품목

H S	품 목 명	지 정
6814 10 0000	○판, 슈트 및 테이프의 집성운모 절연제품 (집성운모, 박은 제외)	'91
8502 12 000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초과 375KVA 이하의 발전세트	'87
8502 13 10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400KW에 상응하는것 이상 750KVA 이하의 발전세트	'87
8502 13 200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0KVA 초과 1,500KVA 이하 발전세트	'87
8502 13 30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1,500KVA 초과 3,500KVA 이상의 발전세트	'88
8502 20 1000	○불꽃 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이하의 발전세트	'88
8504 40 2010	○무정전전원장치 (단상 0.5KVA 이상 50KVA 이하 삼상 10KVA 이상 750KVA 이하)	'87
40 2090	○전동기속도제어장치 (삼상 0.5KVA 이상 400KVA 이하의 것)	'87
8508 10 1000	○각종의 전기드릴 (착암기 제외)	'87
10 9000	○기타 각종의 전기드릴 (착암기 제외)	'87
20 0000	○전기톱	'87
80 1000	○전기그라인더, 샌더, 폴리셔와 부러셔어	'87
80 2000	○대패와 그루버	'87
80 9000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87
8536 20 0000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 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 차단기 (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며 정격전압 60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 (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V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V 이하의 것)	'86
8536 50 9000	○전자개폐기 (Magnetic Switch) (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전압 660A 이하용으로 정격용량 375KW 이하의 것)	
8544 11 1000	○절연도료 피복 권선용 전선	'85
8544 20 0000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통축도체	'84
8544 60 3090	○전압 100KV 초과와 기타전선 (Bus Duct는 제외)	'85

에너지소비 최저 효율제 실시 - 냉장고, 에어컨, 조명기기 -

내년부터 냉장고·에어컨·조명기기에 대해 에너지소비 최저효율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생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의 효율향상을 도모키 위해 작년 8월에 고시한 에너지소비 최저효율제를 당초 예고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에너지절약제품의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소비 최저효율제 대상품목은 냉장고와 에어컨·조명기기등 3개 품목으로 각 품목별로 최저효율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중단과 같은 제재조치는 없으나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해당업체와 모델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품목별로 목표효율을 제시, 기준년도까지 관련업체들이 목표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도모키 위해 현재 자동차·냉장고·에어컨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의 등급별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대상품목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상공부는 또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최저효율제의 시행성과를 감안, 단계적으로 최저효율제 대상 품목도 확대할 계획인데 내년부터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은 현재 10% 정도가 최저효율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3년도 첨단생산시스템 開發사업비 대폭 확대 - 총 169억원 투입 -

상공자원부는 93년도 첨단생산시스템 개발사업을 확정, 초정밀조립기술등 37개 과제 개발에 정부지원 87억원등 지난해의 54억보다 3배 이상인 16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상공부에 따르면 2천년까지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G7프로젝트의 하나인 첨단생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1단계 2차년도사업(93년 12월~94년 11월, 유연생산시스템개발)을 이같이 확정했다.

개발과제는 신규가 초정밀조립기술, 시스템통합기술, 완제품검사 및 조정기술등 20개, 계속과제가 5축머시닝센터등 17개이다.

이 사업에는 총괄주관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의 생산시스템개발센터를 비롯 차세대가공시스템을 담당할 세일중공업, 첨단전자제품 조립·검사시스템등을 담당할 삼성항공등 17개업체 및 대학이 주관하고 총 53개 업체 및 대학·연구소등이 참여한다.

주관기관별 정부자금지원액은 생산기술연구원이 13억원, 세일중공업이 25억원, 삼성항공이 15억원등으로 상공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과 과기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자금에서 각각 50%씩 지원된다.

한편 상공부는 내년도에 총괄주관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기획활동을 강화, 염색·신발·주물·주조등 3D업종에 대한 시스템설계 가능성을 타진, 생산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화상담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94년 품질조사품目 568개 확정 - 工振廳, 올해보다 238개 품목 늘려 -

공진청은 94년도 품질조사 대상품목을 폴리에틸렌관이음새등 총 568개 품목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조사품목 330개 보다 238개 품목이 증가한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불량상품 구입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품목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공진청은 품질조사 대상품목을 소비자 불만이 많은 품목, 품질취약품목, 안전위해품목, 국민생활과 관계가 밀접한 품목등을 중심으로 이같이 선정하고 품질조사 방향도 기존의 품질유지나 인·허가제품의 신뢰성유지에서 내년부터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시·도별 지역특성에 따라 품질조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도의 지방예산이 허용하

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678개 품목을 별도 선정했으며 사회적 물의 야기품목에 대한 특별 품질조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공진청은 품질조사가 완료된 품목에 대해서는 결과를 정밀·분석하여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등에 활용하고 불합격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등 각종지원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및 제품 품질향상을 유도키로 했다.

공진청은 시장감시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을 구입, 인·허가당시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4년도 공업진흥청 품질조사대상(전기관련)은 다음과 같다.

▲ 전기(5) = 누전차단기, 환풍기, 형광램프, 형광등기구, 가정용 소형변압기.

외국인투자 豫示업종 早期개방 — 外國人투자활성화 세부대책마련 내년실시 —

정부는 외국인의 對韓투자진출을 촉진키 위해 올 상반기 마련했던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예시계획을 재검토, 일부 업종의 개방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현재 高度技術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해외 단기차입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계획상 오는 96~97년으로 개방일정이 예시된 54개 업종중 일반구역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등 일부 업종을 조기개방키로 했다.

또 개방이 유보된 92개 업종중 생물학적 제제제조업과 여객 및 화물터미널 시설운영업등 오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시 개방이 불가피한 업종은 추가 개방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고도 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海外단기차입의 이용대상과 한도를 내년 1월부터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外投기업에 외국인투자금의 50%까지 해외차입이 시설재 수입용에 한해 허용되고 고도기술수반 기업의 차입한도는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도기술수반사업(현 86개) 및 고도기술(현 106개)의

범위를 확대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분을 10%미만의 투자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지분을 50% 미만의 투자에 대한 투자절차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외자기업의 자본재도입 및 일본계 기업의 사무용기기 도입등에 대해서는 對日수입선다변화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외국기업 상사주재원이나 기술지도요원에 대한 비자발급에 원활화를 기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대책 (요약)

◆ 투자환경개선

▲ 海外借入 범위 및 한도 확대 = 현재 외화차입이 허용돼 있는 고도기술 수반기업은 차입한도를 외국인투자금액의 50%에서 75%로 늘리고 일반제조업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50%까지 시설재수입용에 한해 해외단기자금 차입을 새로이 허용.

▲ 외국인 土地취득제도 개선 = 투자가 허용되는 전업종에 대해 실수요 토지 및 임직원용 택지(200평 이내) 취득을 허용하는 한편 제조업은 토지취득을 신고제로 전환. 택지취득은 외투기업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및 사무소대표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 외국인 專用工團 설치 = 수도권 인근에 전용공단을 조성해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키 위해 94년 예산에 반영하고 법적근거를 마련.

▲ 자본재 도입 원활화 = 외투기업의 자본재 도입시 對日 수입선다변화제도 적용을 완화하고 특히 日本系 기업 및 국내지사에 대해 컴퓨터·프린터등 실수요 사무용기기 도입을 허용.

▲ 固有業種 합작투자 원활화 = 중소기업의 합작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기업이 고유업종에 진출하더라도 지분이 50%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배제(94년 6월).

▲ 노사관계·기술인력 확보 = 노동부에 외투기업 고충처리 專擔班을 설치, 운용하고 국내기업과 똑같이 병역특례 보충역을 배정(94년 상반기 시행).

▲ 조세지원 확충 = 초과보유소득세제상 적정보유율을 배당가능이익의 40%에서 50%(또는 자본금의 10%)로 늘리고 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해 내년부터 시행. 아울러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고도기술 사업범위 (현 86개 업종)를 확대하고 고도기술 소요제품 및 기술 (현 106개)도 재조정해 내년 1~3월중 시행.

▲ 주재원 및 기술지도요원 체류절차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및 사무소등 주재원과 기술지도요원에 대한 90일이상 장기체류 입국사증(비자) 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위임.

입국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제출서류 간소화 (93년 3월 시행).

◆ 외국인 투자제도 및 절차간소화

▲ 외국인투자 개방확대 = 투자개방 5개년 예시계획상 96~97년에 개방 예정인 일부업종을 앞당겨 실시하고 개방이 유보된 업종중 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시 개방이 불가피한 업종은 일부개방

아울러 개별법령에 의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항공·수산·광업등 관련업종에 대한 제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폐지.

▲ 절차 간소화 = 현재 20~30일 걸리는 신고서 처리를 당일 처리로, 투자금액등이 경미한 인가는 30일에서 5일로, 또 주무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이와함께 구비서류도 6종에서 3~4종으로 줄이고 지정거래 외국환은 행제를 폐지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는 영위업종에 대한 제한을 적용치 않고 타사주식 취득규제도 폐지.

▲ 기술도입 절차간소화 = 방위산업·고도기술을 제외한 기술도입에 대해서는 주무부 기술도입신고서를 폐지. 또 외국환은행의 契約 및 對價支給인증서 서류를 현재 4~6종에서 2~3종으로 간소화.

공정거래위 신고대상 기술도입계약 범위를 시장점유율이 크거나 판매가격제한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 축소 (내년 1월 시행).

工場地方이전 · 農工團地入住業體 租稅減免 적용 — 國會 財務委 稅法개정안 수정통과 —

현행 공장지방이전 및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한 조세감면지원이 오는 95년까지 계속 적용된다. 국회 재무위 및 예결위는 재무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키 위해 양도하는 경우 현재 양도세 및 소득세를 전액면제하는 세제혜택이 있으나 오는 96년부터 법인세 감면은 폐지하고 양도세는 감면폭을 50%로 축소키로 했다. 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재 3년간 전액면제 2년간 50% 감면에서 오는 96년부터 5년간 50% 감면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당초 내년부터 감면을 축소하려던 정부계획의 시행시기를 각각 2년간 연기한 것이다.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부가세 예정 신고(4, 10월)때 지급처럼 영업실적을 신고할 필요없이 직전 확정신고(1, 7월)때 절반만 세금으로 내면 되도록 했다.

수정안은 이밖에도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대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비출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범위내의 상여금은 손금산입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편 재무부 추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94~95년중 9242억원 (93년 478억원)인 반면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는 1조 5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簡易還給 대상企業 1억弗로 擴大 — 財務部, 이달중 시행령 개정해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

이달말부터 관세환급을 簡易定額還給制에 따라 쉽게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이 크게 확대된다.

특히 로컬수출 메이커도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이정액환급제란 관세청이 고시한 平均환급금에 따라 수출면장만을 제시해 관세를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정부는 업계의 관세환급에 따른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달중에 관세환급특별법시행령 및 규칙을 고쳐 시행키로 했다.

財務部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연간 수출실적이 5천만달러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 1억달러로 확대된다.

또 간이정액환급 대상거래는 현재 건당 10만달러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월말께 부터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허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간이환급 이용대상을 수출업체에서 수출물품 제조업체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물품을 만들어 종합상사(수출창구사)등에 납품(로컬수출)한 제조업체도 수출면장에 '수출위탁' 또는 '완제품공급자'등 표시(면장양식이 94년 바뀜)만하면 종합상사의 인감증명서를 받지않고도 간이정액환급방식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세환급을 둘러싼 완제품 공급업자와 수출창구사간 마찰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업계의 간이환급 이용액이 지난 6~9월 중 108억원 규모에서 내년 6~9월에는 214억원(94년 연간 644억원)으로 두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간이정액환급대신에 개별환급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도 선적확인 절차를 간소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환급신청시 선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선장수령증(MR)·세관장 확인날인·외국환은행장 결제확인(선하증권)등 이외에 선사에서 발행하는 선하증권부분을 추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의왕ICD(컨테이너내륙기지)를 통해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ICD설영인이 발급한 내륙컨테이너기지 반입확인서를 선적확인서류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191품목 標準檢査基準제정

— 내년 수출 의무검사폐지 ... 업계自律활용케 —

공진청은 수출검사법이 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수출의무검사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됨에 따라 우선 수출비중이 큰 191개 품목의 표준검사기준을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수출업계의 자율적인 검사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공진청은 수출의무검사 제도 폐지에 따른 수출상품의 수출실적이 2천만달러 이상인 이들 품목에 대해 우선 표준검사기준을 마련, 실시하고 내년부터 이들 품목의 검사기준을 수출선별로 더욱 세분화하고 표준검사기준 제정 품목수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진청이 이번에 마련한 표준검사기준은 수출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수준의 품질규격을 기초로 해 제정한 것이다.

공진청은 그러나 수출상품에 대한 품질요구 수준이 수출선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 내년부터는 표준검사기준의 제정 방향을 수출상대국별로 세분화해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에 맞춰 업계가 수출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표준검사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공진청은 또 내년에는 각국의 품목별 기술장벽을 정밀 조사해 우리업체가 이러한 기술장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장벽이 설치돼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표준검사기준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國內外 情報 ◆

인도의 전력설비 확충계획

인도는 최근 전력 산업의 확대와 전력부문의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산업화를 가속하려는 인도연방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은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인도의 현재 산업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록 인도의 복잡한 연방 정부